

-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 최초요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735
------------	------

2017년 4 월 20 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4월 4일, 서울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7년 4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7년 4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여 운영할 예정인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최초요금 결정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우이신설선 이용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 수도권 교통수단간 환승 편의 제공, 그리고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및 어린이, 청소년들

에 대한 교통복지 제공을 위해, 우이신설선에도 서울시 도시철도 요금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 서울시의 다른 도시철도와 동일하게 기본요금은 1,250원을 부과하고, 수도권 내 다른 도시철도와 버스간 환승 시에는 총 4회까지 무료로 환승할 수 있는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하며, 또한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및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감면·할인제도도 동일하게 시행할 계획임

나. 주요골자

가. 징수대상 시설

- 시설명 :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
- 구 간 :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북한산우이역) ~ 동대문구 신설동 (신설동역) 총13개역(일반역10개소, 환승역3개소), 차량기지 1개소

나. 우이신설 도시철도 최초요금

1) 도시철도 단독통행 시 요금

- 요금체계 : 서울시 지하철요금제(거리비례제)
- 요금현황

구 분	기본요금 (10km이내)		추가요금 (10km초과)
	카 드	현 금	
일 반	1,250원	1,350원	- 10~50km : 5km마다 100원 - 50km 초과시 : 8km마다 100원
청소년	720원	1,350원	- 10~50km : 5km마다 80원 - 50km 초과시 : 8km마다 80원
어린이	450원	450원	- 10~50km : 5km마다 50원 - 50km 초과시 : 8km마다 50원

2) 버스와 환승통행 시 요금

- 요금체계 :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거리비례제)
- 기본요금 : 환승 시 이용한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 10km 이내
(단, 광역버스 30km)
- 추가요금 : 10km 초과시 5km마다 100원(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
- 통합환승할인제 적용기준
 - 승·하차시에 모두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여야 환승할인 적용
 - 환승횟수는 4회(5회 탑승)까지 인정, 6회 탑승부터 별도통행 처리
 - 앞 교통수단 하차후 다음 교통수단 승차시까지의 갈아타는 시간이 30분 이내에서만 통합요금제 적용(단, 21시~07시 까

지는 60분)

- 모든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이 가능하나, 지하철과 지하철의 환승은 환승통로를 통해서만 환승가능 (단, 서울역 경의선 환승은 제외)

다. 요금산출 기초자료

- 협약상 근거에 따라 서울시 지하철 요금제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 적용

라. 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 서울시 지하철 요금 감면대상, 감면비율과 동일

마. 요금 징수방법 :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징수 방식

사. 유사시설의 요금 수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시설사용 내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사용료)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사용요금의 의회 의견청취)

나. 예산조치 :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른 기준운임과 최초

요금간의 차액은 예산으로 지원 필요

- ※ 공기연장으로 인한 지체상금 발생 등으로 사업시행자와 서울시간에 기준운임 금액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므로 향후 소송 등을 통해 기준 운임이 결정되면, 운영개시일 부터 소급 적용하여 요금차액 지원 실시

다. 합 의

-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및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간 합의
 - 요금조정 시기('17.7월 말), 기본요금 및 거리추가요금 등 수도권 전철요금과 동일요금체계 적용에 대하여 합의
 -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를 통한 시스템 개선 일정 합의
- 실시협약에 따라 약정한 사업시행자 기준운임 결정은 향후 소송결과 등에 따라 운영 개시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합의함

라. 기 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결과)

- 최초요금은 사업시행자와 서울시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므로 서울공공투자센터가 검토할 대상이 아님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개요

- 동 의견청취안은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개통을 앞두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¹⁾ 따라 사용요금을 최초 결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우이~신설선 민간투자사업 요금정책 적용’ 회의결과에²⁾ 따라 타 서울시 도시철도와 동일한 기본요금 부과,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 요금제 반영, 현행과 동일한 요금 할인 및 감면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청취안을 제출함

나. 우이신설 도시철도 최초요금(안)에 대한 검토의견

- 서울시 대중교통 운임은 '15.6.27일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 등과 통합환승할인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통카드 사용유무,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여부 및 이용거리 등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별로 차등 부과되고 있음(붙임 1 참조)
- 대중교통은 왕복 이용 특성을 갖고 다른 물가에 비해 이용자가 느끼는 요금 변동에 대한 체감 수준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 운임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최소 교통권 보장 및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1) 제13조(사용요금의 의회 의견청취)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요금을 인상하는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단,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 시에는 최초요금 징수 시작 60일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우이-신설선 민간투자사업 최초운임 요금 관련 회의결과 통보, 교통정책과-27480(2016.12.6.)

따라서, 우이신설 도시철도 최초요금은 현재 운영 중인 지하철 요금 체계와 환승할인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등 현재의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기존 대중교통 이용자가 요금체계에 대한 혼란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지하철 양공사의 운영적자는 연간 약 4천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는 반면,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경우 지하철 양공사와는³⁾ 달리 무임손실에 대해 서울시가 재정지원⁴⁾⁵⁾⁶⁾⁷⁾ 하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하철 양공사의 무임손실률과 무임승차 증가율을 고려할 때 우이신설에 대한 서울시 재정지원액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곧 서울시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실시협약서 제52조에⁸⁾ 따르면 “최초운임을 제외한 연도별

3) '15년 기준으로 볼 때 승차인원 대비 서울메트로 13.6%, 서울도시철도공사 14.8%의 무임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당기순손실액 대비 무임손실률은 서울메트로 132.7%, 서울도시철도공사 46.5%를 차지함

【지하철 무임수송 현황(단위: 백만명, 억원)】

구 분	승차인원 (A)	무임인원 (B)	무임점유 (B/A)	당기순손실 (a)	무임손실 (b)	순손실대비 (b/a)
합 계	1,782	250	16.6%	4,137	3,155	61.2%
서울메트로	1,102	150	13.6%	1,427	1,894	132.7%
도시철도공사	680	100	14.8%	2,710	1,261	46.5%

4)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진방안, 교통정책과-16216(2015.8.4.)

5) 우이-신설선 민간투자사업 최초운임 요금 관련 회의결과 통보, 교통정책과-27480(2016.12.6.)

6)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52조(운임의 결정 및 조정) ⑥ 불가항력 사유,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나 손실이나 수익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부담분 혹은 수익의 일부를 운임을 조정하여 해소하기로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운임을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약당사자가 운임의 적절한 조정예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한 전문기관에 운임 수준조정의 타당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의뢰 결과에 따라야 한다.

7)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53조 (운임의 징수) ④ 무임승차 및 운임 할인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체계에 따른다. 단, 무임승차는 운영개시 후 3.5년을 우선 반영하고 추후 우이~방학 연장구간 협상시 정부의 정책변화를 반영하되 변화가 없을 경우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재협의하기로 한다.

8)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52조 (운임의 결정 및 조정) ④ 최초운임

운임은 원칙적으로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향후 우이신설 도시철도는 해당 운송적자를 서울시 재정지원 또는 요금인상으로만 해결하고자 할 수 있는바, 서울시는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임

특히, 서울시 대중교통 운영기관들의 경우 전체 수입의 82%~96%가 운임수입으로 구성되어⁹⁾ 있는 등 요금수입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이신설 도시철도가 기존 운영기관들을 답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들은 정부 및 국회에서 정한 법령 등에 따라 무임수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총 운영적자의 68%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으며, 우리사회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손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하철 운영기관들의 무임손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도 시급함

마. 서울시 요금정책 적용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에 대한 검토

1) 기본요금 징수에 따른 사용자요금과의 차액 지원(실 이용자 수준)

- 서울시는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최초운임을 기존 지하철 요금(1,250원)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당초 우이신설 실시협약에서¹⁰⁾ 정한 기준 운임과의¹¹⁾ 차액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

을 제외한 연도별 운임은 원칙적으로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하며,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에 적용할 운임을 전년도 9월말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매년도 10월말까지 제출하고,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최종적인 운임을 결정한다.

9) 전체 수입에서 운임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하철의 경우 약 82%, 버스의 경우 95.9%에 이룸

10)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2009.4.9.,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우이트랜스

11) 기준 운임 산정(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기준) 1,150원, 물가상승률 반영시 기준운임 1,449원

우이신설 도시철도와 공사연장에 대한 직·간접비 및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기준운임에 대한 최종 협약을 확정해야 할 것이고 증가추세인 65세 어르신 무임승차¹²⁾, 청소년 및 어린이 요금 등과 관련하여 재정지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2) 시간대별 차등요금 적용(조조시간대)

- 시간대별 차등요금 적용은 조조시간대 기본요금 할인으로 오전 첨두시 대중교통 이용수요를 분산시켜 대중교통 혼잡도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재정지원하지 않는 점 등과 관련하여 예산 범위 및 각 기관별 형평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3) 외국인 영주권 어르신(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 '15.6.27일 대중교통 요금인상 당시 반영된 외국인 영주권 어르신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는 교통복지와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재정지원과 코레일 구간 등 기타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 참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지하철 양공사 등에 65세 이상 어르신 및 외국인 영주권자 무임승차와 조조시간대 요금 할인을 재정지원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이신설 사업자만 재정 지원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음

12) '15년 121백만명(1,508억 45백만원), '16년 213백만명(2,658억 3백만원), '17.3월 52백만명(66백만원)

- 일관된 서울시 정책 유지를 위해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 따른 것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재정지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2017년 예산 편성 당시 요금 할인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올해의 경우 우이신설 민간사업자와 사업비 정산을 해야 하고 서울시가 사업비 정산으로 받아야 할 금액이 재정지원 예상액을 초과함에 따라 별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동의

- 현재 운영 중인 지하철 요금체계와 환승할인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등 요금체계를 현재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기존 대중교통 이용자가 요금체계에 대한 혼란을 받지 않도록 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할 수 있겠음
- 다만, 지하철 양공사와는 달리 무임손실에 대해 서울시가 재정지원 하도록 함에 따라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전 제로 동 의견청취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함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시 대중교통 운임현황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운임

구분	종류	기존		변경		
		교통카드	현금	교통카드	현금	조조할인 (교통카드)
간지선버스	일반	1,050원	1,150원	1,200원	1,300원	960원
	청소년	720원	1,000원	720원	1,000원	580원
	어린이	450원	450원	450원	450원	360원
광역버스	일반	1,850원	1,950원	2,300원	2,400원	1,840원
	청소년	1,360원	1,800원	1,360원	1,800원	1,090원
	어린이	1,200원	1,200원	1,200원	1,200원	960원
순환버스 지선버스 (차등요금)	일반	850원	950원	1,100원	1,200원	880원
	청소년	560원	800원	560원	800원	450원
	어린이	350원	350원	350원	350원	280원
심야버스	일반	1,850원	1,950원	2,150원	2,250원	-
	청소년	1,360원	1,800원	1,360원	1,800원	-
	어린이	1,200원	1,200원	1,200원	1,200원	-
마을버스	일반	750원	850원	900원	1,000원	720원
	청소년	480원	550원	480원	550원	380원
	어린이	300원	300원	300원	300원	240원

※ 어린이/청소년할인은 T-money 홈페이지에서 할인 등록 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

▶ 지하철 이용운임

종류	교통카드 기준		1회권
	기존('15.6.27 이전)	변경('15.6.27 이후)	
일반	< 기본운임 > 10km 이내 : 1,050원 < 추가운임 > 10~40km : 매5km마다 100원 40km~ : 매10km마다 100원	< 기본운임 > 10km 이내 : 1,250원 < 추가운임 > 10~50km : 매5km마다 100원 50km~ : 매8km마다 100원	교통카드운임에 100원 추가
청소년	일반요금 기준 20% 할인	일반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20% 할인 (기본요금 720원)	할인없음 (일반운임 적용)
어린이	일반요금 기준 50% 할인	일반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50% 할인 (기본요금 450원)	교통카드운임과 동일

▶ 대중교통 환승요금

종류	기존 ('04.7 이전)	변경 ('04.7 이후)
일반	독립요금제 이용한 교통수단별로 별도요금 지불 - 버스↔버스, 버스↔지하철 환승시 후승수단 50원 할인	통합요금제 < 기본요금 > 10km까지 기본요금(환승무료) < 추가요금 > 10km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 추가 ※ 아무리 장거리를 가더라도 각 수단별 요금의 합보다 많지 않게 함
청소년	일반요금 기준 20% 할인	일반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20% 할인 (기본요금 720원)
어린이	일반요금 기준 50% 할인	일반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50% 할인 (기본요금 450원)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 최초요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 안 번 호	1735
------------	------

제출년월일 : 2017년 4월 4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개통을 앞두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최초요금 결정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수대상 시설

- 시설명 :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
- 구 간 :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북한산우이역) ~ 동대문구 신설동 (신설동역) 총13개역(일반역10개소, 환승역3개소), 차량기지 1개소

나. 우이신설 도시철도 최초요금

1) 도시철도 단독통행 시 요금

- 요금체계 : 서울시 지하철요금제(거리비례제)
- 요금현황

구 분	기본요금 (10km이내)		추가요금 (10km초과)
	카드	현금	
일 반	1,250원	1,350원	- 10~50km : 5km마다 100원 - 50km 초과시 : 8km마다 100원
청소년	720원	1,350원	- 10~50km : 5km마다 80원 - 50km 초과시 : 8km마다 80원
어린이	450원	450원	- 10~50km : 5km마다 50원 - 50km 초과시 : 8km마다 50원

2) 버스와 환승통행 시 요금

- 요금체계 :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거리비례제)
- 기본요금 : 환승 시 이용한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 10km 이내
(단, 광역버스 30km)
- 추가요금 : 10km 초과시 5km마다 100원(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
- 통합환승할인제 적용기준
 - 승·하차시에 모두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여야 환승할인 적용
 - 환승횟수는 4회(5회 탑승)까지 인정, 6회 탑승부터 별도통행 처리
 - 앞 교통수단 하차후 다음 교통수단 승차시까지의 갈아타는 시간이 30분 이내에서만 통합요금제 적용(단, 21시~07시까지는 60분)
 - 모든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이 가능하나, 지하철과 지하철의 환승은 환승통로를 통해서만 환승가능 (단, 서울역 경의선 환승은 제외)

다. 요금산출 기초자료

- 협약상 근거에 따라 서울시 지하철 요금제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적용(붙임 참조)

라. 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 서울시 지하철 요금 감면대상, 감면비율과 동일 (붙임 참조)

마. 요금 징수방법 :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징수 방식(붙임 참조)

사. 유사시설의 요금 수준 : 붙임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시설사용 내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사용료)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 13조(사용요금의 의회 의견청취)

나. 예산조치 :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른 기준운임과
최초요금간의 차액은 예산으로 지원 필요

※ 공기연장으로 인한 지체상금 발생 등으로 사업시행자와 서울시간에
기준운임 금액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므로 향후 소송 등을 통해 기준
운임이 결정되면, 운영개시일 부터 소급 적용하여 요금차액 지원 실시

다. 합 의

-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및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간 합의
 - 요금조정 시기(17.7월 말), 기본요금 및 거리추가요금 등 수도권
전철요금과 동일요금체계 적용에 대하여 합의
 -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를 통한 시스템 개선 일정 합의
- 실시협약에 따라 약정한 사업자시행자 기준운임 결정은 향후 소송결
과 등에 따라 운영 개시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합의함

라. 기 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결과)

- 최초요금은 사업시행자와 서울시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므
로 서울공공투자센터가 검토할 대상이 아님

따로 붙임 : 최초요금 산정관련 자료

※ 작성자 : 교통정책과 교통기획팀 이성엽 (☎ 2133-2233)

1. 최초요금

가. 최초요금 산출근거

- 실시협약 제25조(운임의 결정 및 조정)
 - ⑥ 불가항력 사유,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나 손실이나 수익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부담분 혹은 수익의 일부를 운임을 조정하여 해소하기로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운임을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합의공문(교통정책과-27480, 2016.12.6.)

〈최초요금 관련 합의사항〉

- ▶ 실제 징수하는 기본요금은 서울시 타 도시철도와 동일요금 부과
- ▶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도 반영
- ▶ 재정지원 규모는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자 요금 확정시 추후 정산
- ▶ 사업자유금 산정, 재정지원 규모 결정, 재정지원방안 ⇨ 추가 협상으로 결정
- ※ 협약상 기준 운임 1,150원(10km 이내, '06.1.1. 불변가격기준)

나. 우이신설선 최초요금

1) 도시철도 단독통행 시 요금

- 요금체계 : 서울시 지하철요금제(거리비례제)
- 요금현황

구 분	기본요금(10km이내)		추가요금 (10km초과)
	카드	현금	
일 반	1,250원	1,350원	- 10~50km : 5km마다 100원 - 50km 초과시 : 8km마다 100원
청소년	720원	1,350원	- 10~50km : 5km마다 80원 - 50km 초과시 : 8km마다 80원
어린이	450원	450원	- 10~50km : 5km마다 50원 - 50km 초과시 : 8km마다 50원

2) 버스와 환승통행 시 요금

- 요금체계 :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거리비례제)
- 기본요금 : 환승 시 이용한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 10km 이내
(단, 광역버스 30km)
- 추가요금 : 10km 초과시 5km마다 100원(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
- 통합환승할인제 적용기준
 - 승·하차시에 모두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여야 환승할인 적용
 - 환승횟수는 4회(5회 탑승)까지 인정, 6회 탑승부터 별도통행 처리
 - 앞 교통수단 하차후 다음 교통수단 승차시까지의 갈아타는 시간이 30분 이내에서만 통합요금제 적용(단, 21시~07시까지는 60분)
 - 모든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이 가능하나, 지하철과 지하철의 환승은 환승통로를 통해서만 환승가능 (단, 서울역 경의선 환승은 제외)

2. 요금 할인 및 감면 대상

대 상	할인율	관련 법규	비 고
어린이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약관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만6세~만12세
청소년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만13세~만18세 만24세 이하 학교 재학생
경로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법 제26조 	만65세 이상 (영주권자 포함)
국가유공자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6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3조) 	해당자
장애인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중증장애인 보호자1명 포함

4. 요금 징수 방법

징수기기	여객 구분	결제 수단	처리 장소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 및 어린이 ○ 무임승차대상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및 동반보호자 - 국가유공자 - 경로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eArea ○ 대합실
자 동 개집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교통카드 ○ 선후불 교통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합실
환 승 개집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교통카드 ○ 선후불 교통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idArea ○ 환승통로
일 반 정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불교통카드 및 1회용 교통카드 이용승객 중 예정거리 초과 이용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idArea ○ 자동개집표기 인근
환 승 정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노선에서 발견한 1회용 교통카드로 우이신설선에 환승하려는 승객 중 잔액 부족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idArea ○ 환승개집표기 인근
보증금 환급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교통카드 이용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교통카드 환급 (현금500원 환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eArea ○ 대합실

5. 유사시설의 요금 수준

기관명	기본 운임	운임체계
한국철도공사	1,250원	○ 거리비례제 - 기본운임 : 10km까지 1,250원 - 추가운임 · 10km ~ 50km : 매 5km마다 100원 추가 · 50km초과 : 매 8km마다 100원 추가
서울메트로	1,250원	
서울도시철도공사	1,250원	
인천교통공사	1,250원	
공항철도	1,250원	○ 거리비례제 + 독립운임 - 독립구간운임 900원
신분당선	1,250원	○ 거리비례제 + 별도운임 - 별도운임 900원
용인경량전철	1,250원	○ 거리비례제 + 별도운임 - 별도운임 200원
의정부경전철	1,250원	○ 거리비례제 + 별도운임 - 별도운임 100원
부산교통공사	1,200원	○ 이동구간제 - 교통카드1구간(10.5km) : 1,200원, - 교통카드2구간(10.5km초과) 1,400원
대구도시철도공사	1,250원	○ 균일제 - 교통카드 1,250원, 1회권 1,400원
광주도시철도공사	1,250원	○ 균일제 - 교통카드 1,250원, 1회권 1,400원
대전도시철도공사	1,250원	○ 이동구간제 - 1구역(10km이내) : 1,250원 - 2구역(10km초과) : 1,350원

6. 역별 운임표 (교통카드 기준)

[단위 : 원]

OD	북한산우이	솔밭공원	4.19민주묘지	가오리	화계	삼양	삼양사거리	솔샘	북한산보국문	정릉	성신여대입구	보문	신설동
북한산우이	-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350
솔밭공원	1,250	-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350
4.19민주묘지	1,250	1,250	-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가오리	1,250	1,250	1,250	-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화계	1,250	1,250	1,250	1,250	-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삼양	1,250	1,250	1,250	1,250	1,250	-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삼양사거리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솔샘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	1,250	1,250	1,250	1,250	1,250
북한산보국문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	1,250	1,250	1,250	1,250
정릉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	1,250	1,250	1,250
성신여대입구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	1,250	1,250
보문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	1,250
신설동	1,350	1,3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

※ 1회권 이용시 상기 금액에 100원씩 가산